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26

발의연월일: 2021. 12. 22.

발 의 자: 장철민·고영인·황운하

홍영표 • 이수진(비) • 오영환

이상헌・송옥주・박성준

임오경 • 전용기 • 노웅래

박정 · 윤준병 의원

(14인)

제안이유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의 개선명령 미이행 시 사용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상습적으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할 필요가 있음.

배출사업장의 법령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시 검사 계획을 7일 전까지 알리도록 하고 있어 시료채취 및 검사의 효과성 저하가 우려 됨.

다이옥신 '측정분석전문기관' 지정 규정은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및 분석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등 부적정 운 영 시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필요가 있음.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협약의 특정면제에 관한 국내 적용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기타 운용상 미비점 개선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잔류성오염물질 배출기준 위반사업장이 개선명령 처분을 미이행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 함.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사용중지 명령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 함.

보고·검사 계획을 사업장에 7일 이내 통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려 함.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전문기관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지정을 받 거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이 미달하거나, 고위 또는 과실로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이행·작성 등 부적정 운영에 해당하 는 경우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하려함.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고시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함.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의 특정면제 관련 국내 적용사항 고시 제정 근거를 마련하려 함.

잔류성오염물질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문구를 정비하려 함(안 제16 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평생에 걸쳐 계속적으로 호흡"을 "호흡"으로, "미칠우려가 없는"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으로, "일일허용노출량을"을 "인체노출안전기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일허용노출량"을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한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 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는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

업자가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4항에 따른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 거나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 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나 일 부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 개선완료 보고서의 작성 방법 및 제출 기한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용중지명 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 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2.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 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잔 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 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 정지기간 중 측정 · 분석 업무를 한 경우
- 3.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의 세부 기준, 사후관리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3항"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 미이행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선완료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배출허용기 준을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부과처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잔류성오염물질"이란 독성	1
· 잔류성 · 생물농축성 및 장	
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	
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	
한 스톡홀름협약」(이하"스	
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	
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	
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u>환경</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9조(일일허용노출량의 설정) ①	제9조(일일허용노출량의 설정) ①
정부는 인간이 <u>평생에 걸쳐 계</u>	<u>ਨ</u> ੋ <u>ੱ</u> <u>ਨ</u> ੋਂ
<u>속적으로 호흡</u> ·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하여 잔류성오염	
물질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	<u>미치지 아니할 것으로</u>
향을 <u>미칠 우려가 없는</u> 기준으	<u> 판단되는인체노</u>
로서의 <u>일일허용노출량을</u> 설정	출안전기준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 질의 종류별 일일허용노출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①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 -----인체노출안전기준-
-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 수출입 · 사용의 금지와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 • 제3호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6조의2(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는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배출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 게 개선완료 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개선완료 보고서 를 제4항에 따른 기한 내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 이

제17조(과징금처분) ① 환경부장 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6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명 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다. <단서 신설>

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배출허 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나 일부 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항에 따른 개선 계획서, 개선완료 보고서의 작 성 방법 및 제출 기한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과징금처분) ① -----------제16조제1 항 및 제16조의2제3항----------. 다만.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 경과되기 전에 사용중지명령 의 대상이 <u>되는 경우에는 사용</u> 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 ⑤ (생 략)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저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① 배 출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에 따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 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대상이 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 법, 측정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렁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 략) <u><신 설></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①
<u>다음</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측정기관</u>
<u>.</u>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잔류
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
관 (김 생)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
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 ① 환

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 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 전 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 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 정지기간 중 측정・분석 업무를 한 경우
- 3.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된 경우
-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령하거나 시료채취 또는 검사(이하 "검 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에는 검사등 개시 7일 전까지 검사등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 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 로 인하여 검사등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

 다.

④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취소의 세부 기준, 사후관리 평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 (현행 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벌칙)	

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생 략)
- 2. <u>제16조제1항</u>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

3. ~ 6.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
<u> 3항</u>